

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상욱 의원

- 존경하는 선배 · 동료 의원님 여러분!
이상욱 의원입니다.

지난 2월 6일 본 의원이 발의한

「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-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 - 「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16조에 따라 서울시 물재생센터에서 운영하는 주민협의회 구성 시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실제 추천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바,
 - 주민대표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이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조례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

는 것입니다.

-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고,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